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62
----------	-----

제출년월일 : 1998.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법원읍 법원리 산108-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림법 및 소방법등 관련 법규상의 보상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타당한 보상이 되어 순직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 “보상금”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산림법, 소방법등 관련 법규상의 보상 이외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말한다(안 제2조제1호)
- “순직자” 라 함은 1998년 3월 29일 법원읍 산108-1번지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를 말한다.(안 제2조제2호)
-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안 제4조제2호)
 - 가.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결정
 - 나.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결정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안 제3조제4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산108-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림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의 보상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타당한 보상이 되어 순직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보상금”이라함은 근로기준법 및 산림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의 보상 이외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 2.“순직자”라함은 1998년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108-1번지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결정
- 2.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번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녹지과 보호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보상금) ①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다.

②보상금은 순직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 통지 및 지급 신청) ①위원회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즉시 그 내용을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족은 보상금 결정 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보상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8章 災害補償

第81條 (療養補償) ①勤勞者が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費用으로 필요한 療養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療養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한 業務上 疾病과 療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2條 (休業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중에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使用者는 勤勞者の 療養중 平均賃金の 100分の 60의 休業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3條 (障害補償) 勤勞者が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려 完治後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障害程度에 따라 平均賃金에 別表에 정한 日數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障害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4條 (休業補償, 障害補償의 예외) 勤勞者が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또한 使用者가 그 過失에 대하여 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休業補償 또는 障害補償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85條 (遺族補償) 勤勞者が業務上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遺族에 대하여 平均賃金の 1,000日分の 遺族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6條 (葬儀費) 勤勞者が業務上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平均賃金の 90日分の 葬儀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87條 (一時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後 2年을 경과하여도 負傷 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平均賃金の 1,340日分の 一時補償을 행하여 그 후의 이 法에 의한 모든 補償責任을 免할 수 있다.

第88條 (分割補償) 使用者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補償을 받은 者の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第83條, 第85條 또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額을 1年間に 걸쳐 分割補償할 수 있다.

第89條 (補償請求權) 補償을 받을 權利는 退職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讓渡 또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90條 (다른 損害賠償과의 관계) 補償을 받게 될 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の 災害補償에 상당한 金品을 받을 경우에는 그 價額의 한도내에서 使用者는 補償의 責任을 免한다.

第91條 (勞動部長官의 審査와 仲裁) ①業務상의 負傷, 疾病 또는 사망의 인정,

(추 81)

法4206, 95·12·29 法5079, 97·4·10 法5323)

第102條의2 (산불豫防·鎮火등의 措置) ①山林廳長은 氣象狀態에 따라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氣象狀態別 산불豫防行動指針을 制定할 수 있다.

②山林廳長은 산불의 효율적인 豫防·鎮火 및 산불管理體系를 확립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불管理統合指針을 制定할 수 있다.

③산불鎮火要員 기타 산불鎮火에 참여하는 者 및 산불의 豫防·鎮火 및 被害復舊에 관계되는 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산불管理統合指針에 따라 산불의 豫防·鎮火 및 被害復舊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4·10 法5323)

第102條의3 (死傷者에 대한 補償)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산불鎮火 및 人命救助 作業으로 인한 死傷者에 대하여는 소방법 제89조제1항의 規定을 準用하여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法5079>

(本條新設 90·1·13 法4206)

第103條 (病害蟲의 驅除豫防) ①山林에 害蟲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山林에 病菌이 蔓延되었을 때에는 그 山林所有者는 이를 驅除·豫防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山林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서 山林의 害蟲과 病菌을 驅除·豫防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山林에 害蟲 또는 病菌이 蔓延하였거나 蔓延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利害關係가 있는 山林所有者 또는 林業協同組合에 대하여 이를 驅除·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13 法4206, 93·6·11, 94·12·22>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病害蟲 이외의 動物의 害를 驅除·豫防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3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驅除·豫防의 費用은 利害關係가 있는 山林面積 또는 立木價格의 比率에 따라 山林所有者가 分擔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은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주 87)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9조 (傷痕・死亡에 대한 補償)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제72조제 2 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에 협력한 사람이 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義勇消防隊의 經費)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全文改正 93・12・27)

제91조 (民防衛業務의 兼行등) ①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92조 (請願消防員) ①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대상물의 구역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업무를 행할 사람(이하 “청원소방원”이라 한다)을 둔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소방원에 대한 필요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청원소방원의 직무 및 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7・3・7)

제11장 救急 및 救助

제93조 (救急隊의 編成・운영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이하 “구급업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급차의 지원, 의료요원의 파견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등을 위하여 구급현장에 있

(후 86)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원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개정 94. 7. 20)

제24조 (활동비의 보조등) ①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은 관내의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 (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년액 80퍼센트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각각 “별표7”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 그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3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 (재해보상금의 청구) ①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

동두천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1996. 5. 10]
조례 제8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결산동 소재 밤나무골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 산립법·병역법및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외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순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산립법 병역법 및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외에 지급하는 :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제3조(순직자의 범위) ①이 조례에서 “순직자”라 함은 1996년 4월 23일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자”의 보상금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들에게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된다.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등) ①이 조례에 의한 순직자에 대한 사전심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동두천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 결정
2.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병무계장으로 한다.

제5조(수당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①보상금은 산림법·병역법및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②특별위로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다.

③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친권자 또는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

제7조(보상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신청은 1996년 11월 9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를 할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심의) 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정서 원본과 재심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방법은 제9조제2항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청구기간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청구) ①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환수) 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파오지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공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시보 또는 1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인의 자격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6. 5. 10 조례 제8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등투천시 산물진화중 순직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한다.